

# 농업계 동향

## 농작물재해보험, 3월 3일부터 판매시작

■ 농림부는 올해 사과·배 등 7개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3. 3일부터 3. 31일 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6.58%) 대비 6.8% 인하된 6.13%로 조정하고, 보험료의 50%(특별지원 2.8% 별도) 및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 특히, 뚝은 감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보험수요가 안정적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도도 양호하여 올해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 본 사업 품목(7개)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뚝은감

■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현장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집중호우 및 나무피해 특약의 전 품목 확대, 집중호우로 인한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및 복숭아의 낙과피해 보상, 태풍으로 인한 감귤의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농업인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였다.

■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재해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밤·참다래·자두” 3품목의 시범사업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감자·콩·양파·고추·수박”에 대해 품목별 주산지를 대

상으로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품목은 보상수준 확대를 위해 현행 본 사업 품목의 특정위험(태풍, 우박 등) 보장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보험판매는 오는 5월부터 품목별 작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품목(8개) : 밤·참다래·자두(2년차), 감자·콩·양파·고추·수박(신규)

■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입농가의 26%인 3만 9천여 농가에 2,0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사례1) 경북 의성의 사과 농가(5ha)는 3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7년 우박피해 등으로 184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 사례2) 경북 청송의 사과 농가(3ha)는 9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7년 우박피해 등으로 91백만원의 보험금 수령

■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보다 많은 농업인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복숭아 낙과피해 등 보상

■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추가  
 ※ (현행) 간접보상(낙엽률 조사) → (개선) 직접보상

■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다만, 당해 작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평년 작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피해 인정

■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 발생시 감수량 인정범위 확대  
 ※ 감수량 인정범위 : (현행) 유과 타박율 70% 이상 → (개선) 전범위

■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 현실화  
 • 피해증상이 경미하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에 대해 50% 피해 보상  
 ※ (현행) 피해과(100% 피해과) · 조정과(80% 피해과) · 정상과(무피해과) → (개선) 피해과(100%) · 중조정과(80%) · 조정과(50%) · 정상과(무피해)

■ 보험대상  
 • 대상품목 : 사과 · 배 · 포도 · 감(단감 · 뽕은감) · 감귤 · 복숭아 · 밤 · 참다래 · 자두 · 감자 · 콩 · 양파 · 고추 · 수박(15 품목)

※ “밤 · 참다래 · 자두 · 감자 · 콩 · 양파 · 고추 · 수박”은 주산지 위주로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재해

- 사과 · 배 · 포도 · 감(단감 · 뽕은감) · 감귤 · 복숭아 :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

- 밤 · 참다래 · 자두 :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강풍피해, 한해(旱害), 냉해(冷害), 조해(潮害), 설해 및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보험판매기간 : 2008. 3. 3 ~ 3. 31

※ 다만, “밤 · 참다래 · 자두 · 감자 · 콩 · 양파 · 고추 · 수박”은 품목별 작기에 따라 별도 판매

■ 주요 계획

•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5개 품목을 시범사업 추가

- 과수 위주에서 식량작물 · 채소작물로 대상품목 균을 대폭 확대

• 주산지 2~3개 시 · 군 대상, 보험료 2억원 규모로 3년간 시범사업 실시

-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상품 설계

※ 선정기준 : 생산비중 및 보험수요, 상품개발의 용이성 등 종합 고려

• 논벼 보험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3년차) 확대 실시 등

- 20개 시 · 군 600농가 대상, 종합위험방식 상품 적용

\* 도상연습 규모 : (2006) 100농가(10개 시 · 군) → (2007) 200농가(10개 시 · 군) → (2008) 600농가(30개 시 · 군)

(출처 : 농림부)

## 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3,230억원 지원

농림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3,230억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농안기금에서 지원하여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수출업체의 원료농산물 구매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운영활성화자금은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이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4.0%(일

반업체 연 4.0%, 농업인단체 연 3.0%)로 대출취급기관이 신청업체의 수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림부는 올해 정책자금의 활용도 제고와 자금사용 업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제도도 크게 개선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지원자금 항목을 지난해까지 원료구매자금과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던 것을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해 오던 지원한도도 올해부터는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초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업체 대출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였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계열화 수출전문업체에 대하여는 자금배정 및 종합평가 시 우대도록 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 계열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수출이 시작되었거나 증가되고 있는 쌀, 장류, 전통주 수출업체도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가공식품중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낮은 라면, 과자류, 빵, 유제품 등은 국산 원료농산물 사용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226개 업체가 운영활성화자금을 지원받아 630백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림으로서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다.

(출처 : 농림부)

## 쌀 목표가격 2012년까지 동결

국회 본회의는 2월 19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1월 29

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2005년 쌀 목표가격의 적용 기간을 2012년산까지로 연장·고정하고, 목표가격의 변경단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쌀 주업 농가들의 소득과 순수익이 2004년을 제외하고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곡 80kg당 17만83원이 2012년까지 유지된다면 소득 안정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목표가격 동결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과 2014년 이후 쌀 관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동결할 경우 쌀 농가가 받는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향후 쌀 목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DDA 협상결과와 도입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 지원제도가 있다. 최근 세부협상 의장 안이 배포된 DDA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보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12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 예정인 소득안정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목표가격 설정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5일 국정과제 보고에서 「농지 및 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완화」방안을 보고 하였다. 이 과제는 국정과제 지표 중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중점 과제로 분류되어 1년 이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발표된 방안 따르면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한편, 한계농지 전용 시 절차도 현행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

화된다. 이외에도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은 일부 농업보호구역을 제한 대상에서 해제, 농업진흥지역개발 시 해당 면적만큼의 농지를 조성해야 하는 의무 철폐, 농업법인의 구성 요건을 개선하여 농지 소유조건 완화, 상속·이농농지 소유한도 철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일부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농업인의 재산권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안에 대해 국제곡물 상승 등의 여건 변화 속에서 식량 자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농지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가 상승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자 선정

농림부는 2월 11일 2008년 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자로 논산수출물류(딸기, 배), 참다래유통사업단(참다래, 고구마), 대관령원협(감자, 배추), 안성맛춤조합공동(신선채소) 등 13개 조직을 선정하였다. 이는 2007년 11월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16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공개발표,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농산물 공동마케팅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산지유통주체들이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공동마케팅, 브랜드화를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산지유통업체가 공동마케팅을 하면 출하선도금, 원료구입 및 계약재배 계약금, 매취사업자금,

무이자인센티브(30억원 이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150억 원 내에서 운영자금(용자 80%)도 지원한다. 2008년 사업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생산자 조직을 세 등급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 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5년 9개 조직을 대상으로 시작된 공동마케팅 사업은 2006년 6개, 2007년 4개를 지정하는 등 올해까지 총 32개 조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농림부는 2017년까지 지원 대상 조직을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 농가당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군에 신청하여 등록하면 지원가능

■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는(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 ㉞

(출처 : 농림부)